제9장 교과이수와 졸업

제40조(학점인정)

② 특별시험과 자격증 등에 의한 학점인정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매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아니한다. <개정 98. 9. 1>, <개정 99.9.1>, <개정 2005.1.24>, <개정 2005.9.15.>, <개정 2018.2.22.>

④「병역법」에 의해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거나 방송・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학사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08.6.1>

⑤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학점인정 절차와 범위 등 세부사항은 학사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08.6.1>

제5장 시험・성적・학점

제2절 성적과 학점

제68조(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인증서와 자격증 등을 취득한 학생은 소속대학에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TOEIC, TOEFL 인증서(공인기관 발행)
2. 본 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취득한 모의토익 인증서
3. 인정과목 관련 자격증(국가(공인기관) 시행)

<신설 98. 9. 1>, <개정 99.9.1>, <개정2002. 3.1>, <개정2004.2.20>, <전항 개정 2009.4.6>

② 소속대학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자격증 등 증빙서류(원본)를 확인하고, 해당 등급과 학점을 심사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 <신설 98. 9. 1>, <개정 99.9.1>

③ 자격증 관련 해당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B0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학점 신청이 가능하며, 취득성적은 최대 A0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.<신설 98. 9. 1>, <개정 99.9.1>, <개정2002. 3.1>, <개정 2019. 1. 7.>

④ 자격증 취득 등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한다. <개정 99.9.1>